



2026학년도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2026.01)

□ 창업학점인정 제도 안내

- 창업(창업현장실습)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

□ 창업현장실습 주요 내용 안내

가. 신청자격: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학생

- 1) 해당 학기 등록 및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휴학생은 다음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만 신청가능)
- 2)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별첨1] 참조
- 3)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학생

나. 수강가능학점: 학기당 3학점 이하

- 1) 창업현장실습 및 창업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통산 6학점 이내 수강
(창업현장실습, 창업실습, 현장실습 교과목은 재학 중 통산 15학점 초과 불가)
ex) • 창업현장실습1, 2 → 가능
• 창업실습 1, 2 → 가능
• 창업현장실습 1, 창업실습1 → 가능
- 2) 이수 인정은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하는 학과 또는 단과대학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실습 수행요건(아래 모든 요건을 이행해야 함)

- 1) 지속적인 창업활동: 창업현장실습 기간 중 폐업 시 학점 인정 불가
- 2)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 및 평가: 사업계획서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현장실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 제출과 평가 실시
- 3)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 관련 분야로 한정
- 허용 제외 대상 업종 [별첨2] 참조
(전공과 무관하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창업현장실습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2026.01.22.(목)~02.06(금) 24:00까지**
- 2)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창업교육센터 메일(startup_edu@ajou.ac.kr)**로 제출
 - 메일 제목: **[창업현장실습 신청] 학과_학번_이름**
 - 파일 형식: ZIP 파일
- 3) 제출서류
 - ① 창업현장실습 참여신청서(붙임1)
 - ②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붙임2) ※항목 확인 후, 자유양식으로도 작성 가능
 - ③ 2026-1 창업대체학점인정 교과목 신청사항(붙임3)
 - ※ 작성시 [교과목명], [신청전공] 란의 메모 정독
 - ④ 사업자등록증

□ 창업 학점 인정 절차

순서	단계	주체	내용
1	신청	학생	기한 내 신청서류 창업교육센터 이메일로 제출
2	심의	창업교육센터	서류 확인 및 창업교육 학사제도 위원회 송부
		창업교육학사제도 위원회	최종 심의(신청 학생의 수강 가능 여부 결정)
3	결과반영	창업교육센터	교학팀에 창업현장실습 과목 개설 요청
		교무팀	수강정정기간에 <창업현장실습> 일괄 입력 ※ 학과별 업무 처리 기간 상이
		학생	결과 확인
4	활동수행	학생	매주 월별보고서(일별 출근카드) 제출 학기 말 월별보고서 최종정리본, 종합보고서, 사업계획서 제출 ※ 창업교육학사제도 창업대체학점 인정 관련 심의가 완료된 창업현장실습 수강자에 한해 추후 메일로 활동 상세 안내 예정
		지도교수	제출 서류 확인 후 성적 부여
		창업교육센터	학생 보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 제출 내역 확인
5	학점인정	지도교수	15주 실습 활동 점검 및 최종 제출 서류 평가 후 학점 부여(Pass/Fail)
		학생	성적 반영 내역 확인

□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서명란에 **본인 및 학과장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2) 창업현장실습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므로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 인정 불가
 - 총 실습기간의 1/4 초과 결근자
 -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

□ 문의 아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031-219-3658, 3830 / startup_edu@ajou.ac.kr

[별첨1] 창업현장실습 인정 창업 교과목 키워드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

[별첨2] 허용 제외 대상 업종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금융 및 부동산	K64~66
부동산업	L68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무도장 운영업	9129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